

부담금관리기본법(안) 수정 건의(안)

(서동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3
----------	-----

제안년월일 : 2001년 12월 12일
제 안 자 : 서동예 의원외 12인

1. 주 문

- 개발부담금 부과를 서울, 경기, 인천으로 국한하는 입법행위에 대하여 개탄하며 입안자의 각성을 촉구함.
- 개발부담금은 성격상 불로소득의 이익을 환원하는 제도로써 어느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될 뿐더러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개악적 입법 행위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 그동안 많은 고통 속에서도 대의적인 명분에 충실히 따랐던 수도권 주민들에게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 법(안)을 반드시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함.

2. 제안이유

- 준조세 성격의 각종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부담금을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안)을 의원 발의로 상정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 수도권은 그동안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은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득력 없는 논리를 앞세워 지역간을 차별화 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입안행위에 대하여 통탄하며,
- 본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 기업유치를 억제하는 악영향이 우려가 되므로 부담금관리기본법(안) 부칙 제2조 제1항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건의문 : “별지”)

부담금관리기본법(안) 수정 건의문

세계화·지방화를 선도하고 있는 이천시는 지방자치시대에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무한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많은 규제법령과 개발의 제한으로 지역주민에게 키다란 고통과 불만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에도 또 다른 불합리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규제법령의 제정으로 수도권 지역 주민들만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반드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 드립니다.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부담금 관리·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을 통합·관리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중복 부과되거나 존치의 필요성이 미흡한 부담금 등을 정비하고자 본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공감하나, 부담금 부과 대상 지역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으로 국한하고 그 이외의 지역은 부과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지역형평성에도 위배되는 불합리한 입법이며,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수도권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이고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와 이미 여러차례 수도권 주민의 고통을 정부에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해묵은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하려 할 경우 이는 정부 불신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본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수도권 주민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선진국 사례에서 보았듯이 영국 등지에서는 인구파밀지역에 대한 수도권인구 억제정책을 수도권 경쟁력강화 정책과 공업활성화 정책으로 선회하여 추진하고 있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여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자유권적 기본권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성격상 불로 소득의 이익을 환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특정지역에만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및 지역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입법행위이므로 반드시 동법률(안)은 수정의결되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지방자치 본래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온 가운데 2001세계도자기 EXPO를 19만 이천시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성공적으로 치루워 냈습니다. 그러나 이천 지역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서 효자산업으로 자리를 굳히고 고용창출의 일익을 담당해 왔던 세계 유수의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가 장기간 계속된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국내 자금시장 경색등 유동성의 문제로 지역경제가 날로 침체되어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지역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의 발의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기업체가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에 기업유치를 억제하는 악영향을 끼쳐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되어 벌써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및 공장신설, 관광지 조성사업 등에 과다한 규제로 인해 타 시·군보다 현격한 지역불균형을 이루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존의 기업체도 공장부지 증설이 불가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행하고 있어 지역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화시대에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안) 부칙 제2조 제1항을 수정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을 폐지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대승적으로 검토하시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12월 17 일

이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2조 제6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p> <p><u>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p> <p><u>제3조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특례) 국가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1일 이후에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이 정하는 시기 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②~⑫ (생략)</p>	<p>부 칙</p> <p><u>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6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 (다른 법률의 개폐)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u></p>